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2차) 계약서

(주)판교2밸리대토개발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식회사 케이리츠투자운용(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的 자산관리위탁계약에 관하여 [2020]년 [01]월 [22]일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2020]년 [06]월 [29]일에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이하 총칭하여 ‘원 계약서’)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계약(이하 ‘본 계약서’)을 체결한다.

아 래

제1조 (변경내용)

‘원 계약서’ 상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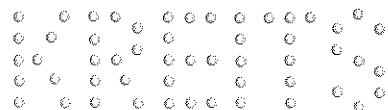
원계약서	변경계약
제9조(수수료) ③ 기본운용수수료는 분기별 금 이천오백만 원(₩25,000,000)(부가가치세 별도)을 보수로 하고, 매 분기(3개월)마다 해당 분기말일(해당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그 시작일은 “갑”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를 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단, 당해 분기의 “을”的 업무 수행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분기의 보수는 실제 업무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지급예정인 보수가 100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분기보수와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리츠의 현금흐름상 필요시 그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③ 기본운용수수료는 분기별 금 일천팔백칠십오만원(₩18,750,000)(부가가치세 별도)을 보수로 하고, 매 분기(3개월)마다 해당 분기말일(해당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그 시작일은 “갑”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를 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단, 당해 분기의 “을”的 업무 수행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분기의 보수는 실제 업무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지급예정인 보수가 100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분기보수와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리츠의 현금흐름상 필요시 그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적용 시점)

본 계약서에서 변경된 내용은 계약 체결일이 속한 분기에 대한 보수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서 변경된 사항 이외의 모든 계약내용은 ‘원 계약서’를 준용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3년 [5]월 [17]일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15층(여의도동, SK증권
빌딩)

주식회사 판교2밸리대토개발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임 성 열



“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15층(여의도동, SK증권
빌딩)

주식회사 케이리츠투자운용
대표이사 김 수 형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2차) 계약서

(주)판교2밸리대토개발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식회사 케이리츠투자운용(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的 자산관리위탁계약에 관하여 [2020]년 [01]월 [22]일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2020]년 [06]월 [29]일에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이하 총칭하여 ‘원 계약서’)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계약(이하 ‘본 계약서’)을 체결한다.

아 래

제1조 (변경내용)

‘원 계약서’ 상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계약서	변경계약
<p>제9조(수수료)</p> <p>③ 기본운용수수료는 분기별 금 이천오백만 원(₩25,000,000)(부가가치세 별도)을 보수로 하고, 매 분기(3개월)마다 해당 분기말일(해당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그 시작일은 “갑”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를 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단, 당해 분기의 “을”的 업무 수행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분기의 보수는 실제 업무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지급예정인 보수가 100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분기보수와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리츠의 현금흐름상 필요시 그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수수료)</p> <p>③ 기본운용수수료는 분기별 금 일천팔백칠십오만원(₩18,750,000)(부가가치세 별도)을 보수로 하고, 매 분기(3개월)마다 해당 분기말일(해당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그 시작일은 “갑”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를 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단, 당해 분기의 “을”的 업무 수행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분기의 보수는 실제 업무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지급예정인 보수가 100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분기보수와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리츠의 현금흐름상 필요시 그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p>

제2조(적용 시점)

본 계약서에서 변경된 내용은 계약 체결일이 속한 분기에 대한 보수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서 변경된 사항 이외의 모든 계약내용은 ‘원 계약서’를 준용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3년 [5]월 [17]일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15층(여의도동, SK증권
빌딩)

주식회사 판교2밸리대토개발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임 성 열



“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15층(여의도동, SK증권
빌딩)

주식회사 케이리츠투자운용
대표이사 김 수 형

